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6. 20(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4년 6월 2일
- 회부일자 : 2014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2014년 6월 11일

-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명칭과 소재지 사항 규정 방식 정비(안 제2조)
 - 현행 조례에 명시 → 지방의료원 정관에 명시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조항의 자구 개정(안 별표 1)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의 명칭 및 소재지 사항의 규정 방식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조항 및 상위법과의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11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 1의 위반행위란 중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정관) 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위반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